

수자원현안위원회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 수자원현안위원회(이하 현안위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현안위는 수자원 관련 기술적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, 토론회,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여, 현안문제에 해결을 위한 우리 학회 차원에서의 연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.

제3조(구성·운영) 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원 중 총 15인 이내를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, 위원장 업무를 보좌하게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, 간사의 순으로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현안위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

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이슈페이퍼 담당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.

③ 개최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, 의사(議事)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2/3 이상으로 한다.

④ ③항에도 불구하고 현안위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결 정족수는 제8조를 따른다.

제5조(이슈페이퍼 담당위원) ① 이슈페이퍼 1편당 3인의 담당 위원을 선임하며, 필요시 2인 이내의 객원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담당위원 수를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.

② 이슈페이퍼 1편당 감수위원 3인을 선임한다.

제6조(이슈페이퍼 출판 승인) 이슈페이퍼 출판을 위해서는 현안위 위원 2/3 이상의 승인을 받은 후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.

제7조(저작권) ① 이슈페이퍼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이슈페이퍼 제출 시 학회에 저작권 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저자가 이슈페이퍼를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8조(개정)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로 현안위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은 ①항의 찬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의 일부 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의 일부 개정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